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. 9. 5 선고 2017가단433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산청군농업협동조합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9. 5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3. 16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6. 3. 17. 접수 제3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최은경

별지